

노인학대 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 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7. 지금 하고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9.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10.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 신고 및 상담(129 혹은 1577-1389) *****

■ 목적

본 지침은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 및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문제를 방지하고, 본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아울러 현장에서 실제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함.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장, 1조의 2항의 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또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책임)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3. 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 흉기로 위협한다, 찌른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다. - 신체를 구속·감금한다. 묶는다. - 무리하게 먹인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강하게 혼든다, 난폭하게 다룬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 신체 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팔, 다리 등) -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의 출혈흔적 - 영양부족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증세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 또는 활동수준의 변화

2)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 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져 있음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 또는 하혈 - 성병 - 우울, 수면장애 - 사회관계의 단절 - 분노 또는 수치심

3)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양로원 등의 시설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외출 시키지 않는다. -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 노인을 보지 않거나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창피를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에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이외에는 응답이 없다.

4) 경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노인의 돈을 빌려준다. - 노인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생활을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다. - 채납된 각종 고지서가 집에서 발견된다. - 은행계좌에서 현저한 또는 비적절한 거래가 발견된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 재산이 타인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5) 방임

구체적 행위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 교환, 이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한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물, 대소변 냄새 등 노인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한 환경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다. - 욕창, 땀띠, 염증, 이(기생충) 등이 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 또는 탈수증상이 있다. -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고 있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 - 언제나 같은(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더럽고 찢어진 의복을 입고 있다. - 침대나 이불이 오물로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 자신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에 대해 본인의 할 의사가 부족하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 또는 약복용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7) 유기

구체적 행위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자녀(보호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겼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4. 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거, 누구든지 노인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요양기관의 노인학대예방활동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일반직원(요양보호사)은 노인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 운영규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상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전문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신고 및 대응조치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②

3)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전국 25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법률·의료서비스 연계, 노인 학대 예방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4)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기관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5) 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법률·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7. 노인권리보호

1) 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란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건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않고 생활할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소유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